

2010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안내

방송법 제38조에 의하여 「2010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2010. 2. 8.

방송통신위원회·한국전파진흥원

1. 사업 목적

-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및 방송수신기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

가.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

- 지원 분야 및 사업 유형

지원 분야	사업유형
방송수신기 보급사업	- 시각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
장애인 기획사업 지원	-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이 가능한 창의적 기획사업 (장애인 관련 정책제안, 세미나 및 교육 등)

- 지원자격

- 시청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, 시·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
※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,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(기획재정부,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)

나.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지역 지상파방송사(KBS 제외) 및 종합유선방송사(SO)
- 지원분야 및 지급기준

지원분야	지급기준
- 지역 지상파방송사 (KBS제외)	- 주 1회 이상 정규편성 프로그램 - 분당 3~6만원 지급(등급별 차등)
- 종합유선방송사(SO)	- 연간 지급한도 : 600만원 이내/개인 또는 단체

※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

3. 사업 추진기간

- 가.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: 2010년 3월 ~ 2010년 9월 30일
- 나.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: 2010년 3월 ~ 2010년 11월 30일

4. 신청기간 및 접수처

- 가. 신청기간 : 2010. 2. 8.(월) 09:00 ~ 2010. 2. 19.(금) 18:00
- 나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(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,
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)
- 다. 접 수 처 : ☎ 138-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4층
한국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(☎ 02-2142-4444~6)
- 라. 유의사항 :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
아니함

5. 사업설명회

- 가. 일시 및 장소 : 2010. 2. 10(수) 15:00,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실
- 나. 신청서류 작성요령, 심사기준, 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 및 한국전파진흥원
홈페이지(www.korpa.or.kr)를 참조